

원고 : 강성국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2다길 28 3층 정보공개센터)

피고 :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청구취지

1. 피고가 2022. 6.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 처분 중 비공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I.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라 합니다)의 상근 활동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10월 9일 창립되어, “감추어져 있는 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sup>1)</sup>
- 2) 피고는 이 사건 대상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 II. 이 사건 처분 및 소송의 경위

- 1)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무원 채용이 유독 ‘대통령비서실’에 한해서는 대통령 측근이나 여당(국민의힘) 유력 인사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해 불공정·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논란입니다.
- 2)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로서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 채용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국민 참여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2. 6. 17. 피고에게 ‘성명/부서/직급(직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

1) <https://www.opengirok.or.kr/>

‘대통령 비서실 소속 전체 공무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2. 6. 29. ‘비서관급 이상’을 제외한 공무원 명단(이하 ‘이  
사건 대상 정보’라 합니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이하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이라 합니다) 하였고, 그 처분은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이상 갑 제1호증의1(비공개통지)]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5. 정보공개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대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상 갑 제1호증의2(이의신청 기각통지)]

- 4) 원고는 대통령 비서실의 이와 같은 처분을 통해 사실상 아무런 자료도  
얻지 못하였고[‘비서관급 이상’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으로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뿐 아니라,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미 공개된  
자료입니다(https://www.president.go.kr/ko/open\_data.php)], 동 처분이  
정보공개법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III.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 1.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공개원칙

- 1)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입니다(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7누34263 판결 등). 그러한 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적시하며(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3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제9조).
- 2)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제2호, 제5호 및 제6호를 비공개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알 권리의 헌법적인 의의, 정보공개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공개 사유 인정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하고, 공개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신중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이익, 즉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보호하려는 외교관계 등 국가 이익의 정도를 신중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7누34263 판결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 대상 정보의 공개 필요성

- 1) ‘공공기관 구성원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제1조) 정보공개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해당 기관 자체 혹은 그 기관이 수행하는 공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그 기관의 인적 구성을 알게 됨으로써 그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고, 그 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공무에 대한 국민 참여도 그 기관 구성의 정당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시작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구성원조차 알려지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공무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은 전혀 확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마목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만큼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더라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 것도 공공기관 구성원 정보의 위와 같은 공개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이 예외적 비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외를 다시 명시하여 절대적 공개 대상 정보를 두고 있는 것은, 대상 정보의 공개 필요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 사람의 생명·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절대적 공개 규정을 명시한 동항 제7호가목을 들 수 있습니다.)

- 2) 일부 공공기관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명단을 업무수행의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여러 차례 해당 위원회 명단의 공개를 명하는 판결을 해 왔습니다. 관련 판결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명단 비공개 결정에 대한 판례>

(서울행정 2008구합31987. 항소심·상고심이 그대로 인용하며 확정. 참고자료1-1)

(법무부가 제3호 사유와 관련하여 “사면심사위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협”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비추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 (중략) ...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러한 위협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비판은 장려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하여 형성된 여론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오히려 자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면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면 결과에 관한 대대적·집중적인 비난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법무부가 제5호 사유와 관련하여 “사면심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위원들에 관한 정보가 감추어진 가운데 비밀리에 이루어져야만 그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위법하다.” ... (중략)... “특히, 공무원이 아닌 4인 이상의 위원들이 광범위한 외부의 여론 및 로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심사과정에 어느 정도 책임과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러한 우려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에도 부당한 외부 여론이나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독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위원들에 관한 신상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국민적 관심이 큰 특별사면 등에



대한 심사과정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중략)... “사면심사위원회는 그 의사결정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국민에 의한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위원의 명단과 약력 등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부의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 명단 비공개 결정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4784 판결. [참고자료1-2](#))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의 명단·소속 및 지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공개할 경우 비록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의회에서 해당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헌법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통성을 저해하는지, 그 학습 내용이 고등학생 수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할 이상,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협의 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 누가 참석하였는지 그 명단, 소속 및 지위를 밝혀 이 사건 협의회가 위 업무를 담당할 만한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점,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교과서 수정 작업에 참여한 이 사건 협의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구성의 정당성에 관하여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집필자 명단 비공개 결정에 대한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 1. 11. 선고 2016누65987 판결. [참고자료1-3](#))

“②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청소년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교과서 집필 작업에 관여한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구성이 편향되거나 요구되는 수준에 못 미치지 않는 등 구성의 정당성에 관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한편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가 비밀리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구성의 정당성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반면, 비밀리에 업무가 이루어져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 (중략)... “④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비록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염려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헌법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통성을 저해하는지, 그 학습 내용이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공익성이 큰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에 누가 참석하였는지 그 명단과 소속을 밝혀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가 위 업무를 담당할 만한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사생활 보호는 순수하게 개인적 영역에 머무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 (중략) ... “⑤ 설사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들 중 상당수가 자신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의 역할, 취지, 구성 및 업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단공개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공개 여부가 좌우될 수는 없다.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 위원들로서는 심의 결과에



부담과 책임을 덜 느끼고, 스스로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관하여 명백히 밝힐 필요성이 없게 되는데 그러한 이익보다는, 다소 심리적 부담 등이 있더라도 공개를 통하여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중대한 작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⑥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 구성원을 공개한다면,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중립성 등에 관한 검증이 이미 집필과 편찬심의 등이 모두 마쳐진 이후에야 가능하게 되므로 구성단계에서부터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서 오히려 처음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구성을 한 경우보다 집필과 편찬심의 등이 종료된 이후 더 큰 국가적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⑦ 편찬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한 위원이 누구인지, 전문성이 있는지, 편향된 경력 등으로 불신을 사는 인물이 아닌지 등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문제는 그 결과물의 신뢰성과도 직결되어 역사교과서가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민주국가에서 역사교과서는 소수의 인사가 자신들의 역사관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과 토론 역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서 편찬심의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4) 이 사건 대상 정보는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에 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판시들이 더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피고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국가안전보장 등 위협(제2호)’ 혹은 ‘업무수행의 공정성 침해 위협(제5호)’ 등은 모두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에 대한 정보가 ‘감추어진 가운데 비밀리에 이루어져야만 그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 때마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 공약으로



나을 정도로(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들이 모두 관련 공약을 낸 바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소속된 수석·비서관 등이 관계 부처 장관 등을 사실상 지휘하며 담당 업무의 구체적인 방향까지 지시한다는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그 어느 나라 보다 중요하고, 그 인적 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의 감시·통제가 그 어느 나라 보다 필요한 국가입니다. 이 사건 대상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대통령 비서실 인적 구성의 정당성에 관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5)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통령 비서실’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 사적 채용 논란 등도 이 사건 대상 정보의 공개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는 사유들입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대통령실 관련 주요 논란>

<p>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 특혜의혹 (참고자료2-1,2)</p>	<p>대통령 비서실이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다누림건설’에 맡겼는데, 다누림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액이나 관급공사 경험이 해당 공사와 맞지 않아, 사적 관계에 따른 특혜 의혹이 불거짐.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실 관련 공사 내역이 모두 비공개로 전환되어 논란이 더욱 커짐.</p>
<p>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참고자료2-3)</p>	<p>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출신 2명, 윤 대통령 외가 6촌 최모씨, 윤 대통령 40년 지기인 황모씨 아들 및 우모씨 아들, 문 전 대통령 사저앞 욕설 시위를 벌인 유튜버 안씨의 친누나 등</p>
<p>민간인의 대통령 스페인 순방 동행 논란 (참고자료2-4,5)</p>	<p>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해외 순방 업무에 관여하고 직접 동행. 과거 신모씨 일가의 윤대통령 측 고액 후원 사실도 확인됨</p>
<p>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한 사진 등 유출 논란 (참고자료2-6)</p>	<p>대통령실 내부 사진과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 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개됨.</p>

**3. 비공개 사유의 부당성**

- 1) 전술하였듯,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를 비공개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 2) 먼저, 제6호는 단서 라목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더라도 공개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사생활 보호는 순수하게 개인적 영역에 머무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1. 11. 선고 2016누65987).

- 3) 또한 제2호, 제5호와 관련해서도, 법문이 명시하였듯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제2호),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제5호)가 인정되어야 하고, 판례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여야 하고(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98. 대법원 확정. 제3호 관련 실시이나 제2호에 관하여도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등),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의 명단 공개가 위와 같은 우려와 위협을 초래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그러한 우려가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실시한 ‘정보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을 하며 “이익단체의 로비나 청탁 또는 유·무형의 압력 등으로 국가이익이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갑 제1호증의1)를 강조하였는데,



<갑 제1호증의1(비공개 통지)>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며 중요한 정책과 다양한 국가기밀을 취급하고 있는바, 직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이익단체의 로비나 청탁 또는 유·무형의 압력 등으로 국가이익이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도 공개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려를 이유로 기관의 인적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관련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정당성을 감추어진 일부 인사들의 개인적 양심에 맡기겠다는 발상으로서 그 자체로 대단히 위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 및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앞에서 소개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관련 판례가 실시하였듯 근본적으로 그러한 우려는 부당한 외부 여론이나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도 갖춘 인사들로서 대통령 비서실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관련 업무가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구성원들로 하여금 담당 업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이 국민 전체에게 공개되지 않고 극소수의 인원과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공개된다면, 관련 정보에 예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개인·단체들에 의한 로비나 청탁 위험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통령 비서실의 각 세부 조직들은 가장 유효한 로비 창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5) 한편 ‘제20대 대통령실’은 ‘비서실’과 ‘안보실’, 2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갑 제2호증\(대통령실 조직도\)](#)], 이 사건 대상 정보는 그 중 ‘비서실’의 구성원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가 비공개 처분 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하는데, 위 조직도에 따르면 ‘안보전략비서관, 외교비서관, 통일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 국방비서관, 사이버안보비서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모두 ‘국가안보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즉 제2호 전단이 나열하는 업무들은 모두 ‘국가안보실’ 소관입니다.



또한 피고는 "대통령실 경호·보안"도 강조하였는데,

<갑 제1호증의2(이의신청 기각 통지)>

○ 정보공개심의회(7.13.) 심의결과, 청구 정보는 대통령실 경호·보안(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2호), 공정한 업무수행(제5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제6호)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비공개'

대통령 경호 임무는 '대통령 경호처'라는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제시한 비공개 사유들은 모두 타당하지 않습니다.

#### 4. 부분 공개 원칙

1) 정보공개법 제14조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설령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대상 정보 중 제2, 5호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비공개 범위는 해당 부분만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즉, 제2호 사유에 따른 비공개는 대통령 비서실 전체 구성원 중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뿐 아니라(하지만 전술하였든 관련 업무는 대통령 ‘안보실’ 소관으로 보입니다) 그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부에 대한 정보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고, 제5호 사유에 따른 비공개는 대통령 비서실 전체 구성원 중 “감사·감독·검사·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뿐 아니라 그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일부에 대한 정보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은 담당 업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 전체 구성원 중 비서관급 이상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다 은폐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합니다.

####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참 고 자 료

2022. 9.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변호사 임자운

서울행정법원 귀중

